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30호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 소관업무담당 계장을 간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생 략)	제22조(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는「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겸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27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의회민원상담관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 소관업무담당 계장을 간사로 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431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제1항 중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을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대응이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대응이 필요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